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490호 2015. 7. 15. (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 거창군 고시 제2015-89호 거창군관리계획[시설(도로,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2
- 거창군 고시 제2015-90호 수승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변경) 승인 고시.....6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2015-626호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7
- 거창군 공고 제2015-631호 거창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재해선정(안) 의견수렴 공람공고.....16

회 관									
--------	--	--	--	--	--	--	--	--	--

거창군관리계획[시설(도로,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거창군관리계획[시설(도로,체육공원),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경상남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도시건축과(☎055-940-358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5. 7. 16.

거 창 군 수

1. 군관리계획[시설(도로,체육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278	9	국지 도로	317	중로 2-29	주상면 도평리 797-1	일반 도로	-		

2)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	소로 2-278호선	노선신설 (L=317m, B=9m)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체육공원으로의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노선을 신설함

(2) 공간시설

가. 체육공원

1) 체육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9	희랑생활 체육공원	체육공원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1225번지	-	증)11,425	11,425		

2)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9	희랑생활체육공원	체육공원 신설 (A=11,425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내 부족한 운동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의 확보를 위해, 체육공원 신설

나. 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m ²)				비 고
	부 지 면 적			구 성 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	증) 11,425	11,425	100.0	
시 설 면 적	-	증) 5,662	5,662	49.6	
도로 및 광장	-	증) 434	434	3.8	
휴 양 시 설	-	-	-	-	파고라 3개
운 동 시 설	-	증) 4,020	4,020	35.2	체력단련장, 다목적구장
편 익 시 설	-	증) 1,208	1,208	10.6	
녹 지	-	증) 5,763	5,763	50.4	

2) 조성계획결정 총괄조서

구 분	면 적 (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원면적	-	증) 11,425	11,425	
시설면적	-	증) 5,662	5,662	공원면적 대비 시설면적 비율 : 49.6% 시설면적 대비 운동시설 비율 : 71.0%
건축면적	바닥면적	-	-	건폐율 : -
	연 면 적	-	-	용적율 : -

3) 세부시설 결정 조서

1. 시설계획 총괄

구 분	시 설 내 용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규모 (개소)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총 계	신설		11,425	5,662	-	-	-		
기반시설	신설	산책로, 광장	434	434	-	-	-		
휴양시설	신설	파고라	-	-	-	-	-	3	
운동시설	신설	다목적구장 - 풋살장 - 게이트볼장	4,020	4,020	-	-	-		
편익시설	신설	주 차 장	1,208	1,208	-	-	-		
기타시설	신설	녹 지	5,763	-	-	-	-		

2. 시설별 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	수 량	비고
						신 설	
총 계		주상면 도평리 1227번지 일원		11,425	-		
1. 기반 시설	소 계			434	-		
		도 로	주상면 도평리 1253번지 일원	359	-		
	1-1	광 장	주상면 도평리 1227번지 일원	75	-		
2. 휴양 시설	소 계			-	-		
	2-1	파고라(소계)	주상면 도평리 1227번지 일원	-	-	3개소	
3. 운동 시설	소 계			4,020	-		
	3-1	체 력 단 련 장	주상면 도평리 1226번지 일원	44	-	체력단련 시설 6개소	
	3-2	다 목 적 구 장	주상면 도평리 1227번지 일원	3,360	-		
		풋 살 장	주상면 도평리 1227번지 일원	2,328	-		
		게 이 트 볼 장	주상면 도평리 1227번지 일원	1,032	-		
	3-3	관 램 석	주상면 도평리 1227번지 일원	616	-		
4. 편익 시설	소 계			1,208	-		
	4-1	주 차 장	주상면 도평리 1228번지 일원	1,208	-		
5. 기타 시설	소 계			5,763	-		
	5-1	녹 지	주상면 도평리 1227번지 일원	5,763	-		

3. 도로조서

등 급	번 호	폭 원(m)	연 장(m)	면 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6개노선	2	174	359				
소 로	1	2	8	31	산책로	1253구	소로2	
	2	2	60	121	산책로	소로3	소로3	
	3	2	48	96	산책로	1225답	소로2	
	4	2	22	43	산책로	1253구	1227답	
	5	2	21	39	산책로	1253구	1229답	
	6	2	15	29	산책로	1227답	1228답	

2. 거창군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도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 거창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도로 지형도면 고시에 같음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수승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변경) 승인 고시

수승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행계획 변경 승인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거 창 군



1. 사 업 명 : 수승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 업 구 역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의 3개리 일원(변경없음)
3. 소재지 규모 : 법정리 4개, 행정리 9개(변경없음)
4. 면 적 : 2,156ha (농경지 : 266ha, 기타 : 2,295ha)(변경없음)
5. 가구·인구 : 619호(농가:515호, 비농가:104호), 인구 1,353명(변경없음)
6. 사 업 비 : 7,000백만원(국비 : 4,900, 지방비 2,100)(변경없음)
7. 사 업 기 간 : 당초 : 2011년 ~ 2015년(5년간)
변경 : 2011년 ~ 2016년(6년간)
8. 시 공 자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변경없음)
9. 사업(변경)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수승대놀이마당, 백제사신길, 정온선생광장)
 - 하천기본계획 관련 인·허가(하천점용)불가로 백제사신길 변경 조정
 - 지역경관개선사업 (연꽃단지조성, 상천숲정비)
 - 상천숲정비사업내 외부 유수입 배제를 위한 배수로 추가시공
 - 소득사업지역 (전통가공식품)
 - 소득사업 전통발효보관창고 구조재 변경
10. 세부사업계획이나 상세한 내용은 건설과 농업기반담당(☎940-3542)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2015.7.1)에 따른 조례개정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현행 :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 개정 :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나. 사회보장 명칭변경

-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보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상근간사 → 직원

다.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의 변화, 대표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 읍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추가
- 대표 및 실무협의체 구성인원 확대 (30인 → 40인 이내)
-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대상 예시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주민생활 지원실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670-807] 에게 서면이나 메일 (seosj7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담당 ☎(055)940-3142] 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소위원회)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의료급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의료급여심의 위원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3에 의한 비상재해대비 시설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영유아보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7조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2.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3. 군수가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 를 둔다.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읍·면 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군수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되고 공동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제3조(기능) 중 7~11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
-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 인원으로 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구성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3분의 2로 구성한다.
-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주민생활지원실장과 관련 법령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현장 전문가로 한다.
-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⑦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주사, 실무분과장 및 읍·면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사무소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④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 ⑤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⑥ 읍·면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읍·면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군 지역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⑧ 읍·면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 필요시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면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 ⑨ 군수는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⑩ 읍·면 지역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실정에 맞게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4조 (직원) ① 대표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2항에 관한 사항
-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5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⑤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거창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재해선정(안) 의견수렴 공람공고

2020 거창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1-5-2-13 및 1-6-1-1, 8-1-1-3에 의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위한 대상재해 선정을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6일

거 창 군 수

1. 공람내용 :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대상재해 선정(안) -계재생략(열람장소 비치)
2. 공람기간 : 2015. 7.20 ~ 8. 10 (22일간)
3. 열람장소 : 거창군 도시건축과
4. 의견 제출방법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팩스,이메일로 접수
가. 주 소 : 670-80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도시계획담당)
나. 연 락 처 : 전화 055-940-3583, 팩스 055-940-3579
이메일 cchojh@korea.kr

- 재해취약성분석 대상재해 선정(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